

2024년도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인프라 고도화) 공모

2024년도 교육부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 선정·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2일

<주무부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 주 호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 광 복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고가의 첨단 R&D장비 도입, 운영을 지원하여 세계적 수준의 혁신적 연구수행 기반 마련

□ 지원계획

구분	사업			사업목적 및 특성	지원대상	지원 규모	
	대학 연구 기반 구축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	인프라 고도화			연간 연구비	연구 기간
집단 단위	대학 연구 기반 구축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	인프라 고도화	대학이 연구거점으로서 글로벌 수준의 혁신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첨단R&D 장비 도입 및 전담운영인력 육성·운영 지원	대학(4대 과기원 제외) 내 설치된 대학부설연구소, 핵심연구지원센터, 공동실험실습관	24~74억원 (간접비 포함)	5년 (3+2)

※ 과제별 평균 50억원(20~70억원)의 장비 구축비를 초기(1년차)에 일괄 지원하고, 전담운영인력 육성 등 운영 예산 연 5억원(단, 1차년도는 과제기간을 고려하여 3.75억원 지원)을 5년간 지원

2. 2024년도 신규과제 지원규모(안)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지원규모	
				과제 수	지원예산
집단 단위	대학 연구 기반 구축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	인프라 고도화	10내외	53,390내외
합계				10내외	53,390내외

3. 신청(수행) 자격 및 참여 제한

※ 신청 및 수행 제한 사항은 신청요강에서 명시한 사항을 우선 적용

□ 신청 자격

- 특정 분야 단위로 연구장비를 집적하여 연구활동 및 공동활용을 목적으로 대학(4대 과기원 제외) 내 설치된 대학부설연구소¹⁾, 핵심연구지원센터²⁾, 공동실험실습관³⁾만 신청 가능

1) 신청마감일('24.4.12.(금)) 기준 한국연구재단 KCI홈페이지(www.kci.go.kr)에 '대학부설연구소'로 등록된 기관

2) 교육부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조성된 '핵심연구지원센터'('24년 기준 68개 센터)

3) 대학 내 정식으로 조성된 '공동실험실습관' 및 '공동기기원(공동기기센터)'

□ 연구책임자 및 핵심연구자 자격

- (연구책임자¹⁾) 지원대상 시설에 소속된 국내대학 이공분야 전임교원²⁾

※ 시설(조직)의 長 외에 소속 연구원도 당 과제의 연구책임자를 맡을 수 있음

- (핵심연구자) 첨단연구장비를 직접 활용하여 수월적 성과를 창출하는 핵심 연구자는 연 5억원 이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³⁾를 수행하고, 최근 5년간의 SCI급 논문 등 연구성과⁴⁾가 탁월한 자

※ 핵심연구자를 포함한 참여연구자 중 1인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 당 과제 연구책임자는 핵심연구자와 동일할 수 있음

구분	연구책임자	핵심연구자
역할	연구장비 구축·관리·지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연구책임자)	첨단연구장비 활용 → 연구성과 창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참여연구자)
과제지원금 활용	장비구축비 및 운영비 지원 (연구비 無)	당 과제 內 연구비 지원 없음

1) IRC 및 IBS 연구책임자는 당 과제 연구책임자 및 핵심연구자로 참여 불가

2) 전임교원은 한국연구재단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 및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조사에서의 인정기준 적용

3) 연구책임자로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예산의 합이 연 5억원 이상인 연구자

4) 최근 5년간('19. 1. 1. 이후)의 논문, 특허(지식재산권)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 시청 및 참여 제한 사항

- ▶ 신청 대학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른 '자체연구 시설장비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구성·운영하여야 함
- ▶ 연구책임자, 핵심연구자 및 참여연구자의 신청제한 및 참여제한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요건검토 및 최종선정 이후에라도 과제 탈락 처리

- 2024년도 재정지원 가능대학 이외의 대학은 신청 제한
- 신청마감일('24.4.12.(금)) 기준 ZEUS에 연구시설(www.zeus.go.kr/fac)로 등록된 시설만 신청가능하며, 본 과제를 통해 구축된 연구장비는 ZEUS 장비 예약서비스를 통해 공동활용 실시('실시간 예약장비'로 등록)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연구자는 참여제한 기간이 연구책임자 신청마감일 전일('24.4.11.(목))까지 종료되는 경우만 신청 가능
 - ※ 타 부처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도 동일
- 연구개시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연구자는 과제 선정 제외
- 참여연구자 중 전담운영인력은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으로 고용하거나 1단계 사업 수행 기간(3년)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하고, 정규직 고용·전환이 불가능한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 지원 종료 후, 3년간 의무 고용함
 - ※ 전담운영인력은 아래 사항 중 한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학생연구원, 인턴, 파견직원 등은 제외
 1. 각 전담운영인력의 인건비는 본 과제에서 30% 이상 계상하여야 함
 2. 전체 전담운영인력 인건비의 합은 첨단R&D 장비 구축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10% 이상이어야 함
- 시설 명의를 분석 서비스 제공, 독립된 계정에 의한 예산·수익금 사용·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독립된 시설 조직 체계·운영규정 및 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 적용 제외
 - ※ 제외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4호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정부 R&D 공통사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여야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개 이내로 제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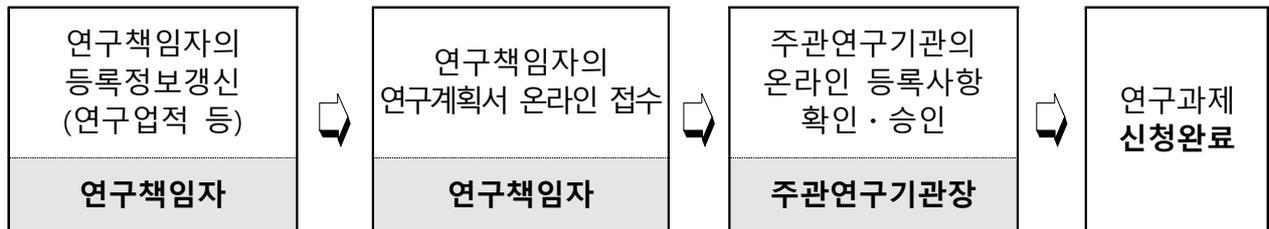
예외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종료되는 과제
 - 연평균 연구개발비 6천만원 이하 소규모 신규과제 (2024년 ~과제 종료 시)
 -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계속과제로 정부 예산사정으로 2024년도 연구비가 6천만원 이하로 조정된(조정 전 6천만원 이하 과제 포함) 과제(2024년 ~과제 종료 시) 등

-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4. 신청절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



※ 별첨의 신청요강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

5. 평가방법

구분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	인프라 고도화	토론(서면)	발표	현장

※ 접수마감 후 사전 검토를 실시하며, 신청자격 요건 미충족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세부평가계획에 의해 변경 가능하며, 사업별 평가 항목 및 배점은 별첨 신청요강을 확인

6. 신청기간

- 연구책임자 온라인 신청기간 : 2024. 3. 28.(목) 09:00 ~ 2024. 4. 12.(금) 18:00
- 주관연구기관 승인기간 : 2024. 3. 28.(목) 09:00 ~ 2024. 4. 16.(화) 18:00

7. 추진일정(안)

일정	추진내용
'24. 3월	■ 2024년도 신규과제 신청 공모
'24. 3 ~ 4월	■ 신규과제 접수
'24. 4 ~ 5월	■ 신규과제 선정평가
'24. 6월	■ 연구개시 (6. 1.)

※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8. 기 타

- 신청요강 및 양식은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 www.zeus.go.kr/apply) 및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참조

9. 문의처

- 사업신청 관련 문의: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042-869-3981, 3956, 3975, 3691)
- 제도·정책관련 문의: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 (044-203-6867, 6868)